

종 법(宗法)

권리법

제11조 본종 승려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.

1. 승려는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 간부 및 종무직에 취임할 수 있다.
2. 승려는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3. 승려는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계고시 및 각급 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.